입 법 정 보

2019-1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5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6.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8
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촌진흥청)············· 8
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9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1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0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12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5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15
1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1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7
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2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9
2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9
24.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5.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21
2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2
2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2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3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4

3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4
33.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5
3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26
3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7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7
3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8
4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29
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9
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0

정부입법 예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5. 7.
- 마감일자 : 2019. 5. 29.

○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7.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9. 1월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1)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 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7.
- 마감일자 : 2019. 6. 17.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29호, 2017.6.20. 일부개정)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두어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시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아 신고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토록 개정(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7.
- 마감일자 : 2019. 6. 17.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여 위반행위 자수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단속인력의 확충과 지자체의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장판매 등을 공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안 제7조)

1)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함께 부여

나. 위반자 공표대상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9조)

1) 원산지표시 위반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함

다.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안 제9조의2)

1)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라.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안 제19조)

1) 자수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7.
- 마감일자 : 2019. 6. 17.

○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의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

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안 별표2제1호가목)

1)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나.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3제2호 및 제3호)

1)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 증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4 제1호)

1)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라. 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안 별표 4 제1호)

1)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마. 국가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안 별표 4 제3호)

1)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7. • 마감일자 : 2019. 6. 17.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 ~ 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

6.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8.
- 마감일자 : 2019. 6. 17.

○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술기준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8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고,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신설(안 제8조제3항)

나.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안 제9조)

다. 항만공사 시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

라. “항만협회”를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업무 전문기관으

로 지정(안 제25조의2제2항)

마.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약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3항)

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 산정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로 위임(안 제91조제1항제41호)

아. 항만협회에 위탁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92조)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5. 8. • 마감일자 : 2019. 6. 17.

○ 방송법 제54조(업무)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 조항의 '송신지원'에 대한 범위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제4항신설)

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9. 5. 8. • 마감일자 : 2019. 6. 17.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수요조사의 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나. 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다. 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

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8. • 마감일자 : 2019. 6. 17.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제16228호,’19.1.15.공포,’19.7.16.시행)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법률제16073호,’18.12.24.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안 제14조)

1)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매립지등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안 제19조)

1)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나 매각 허용

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명시(안 별표 4)

1) 미변경신고 및 허위거짓 신고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자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8. • 마감일자 : 2019. 6. 17.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

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거쳐야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의9)

1)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2조6・제2조의7)

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1)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기존 종중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를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2)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종중 명의 사당의 경우 이전・설치 허용

1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9. ● 마감일자 : 2019. 6. 18.

○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15.6. 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을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을 법 제24조의2제1항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수수료 등 관련 업무 소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라. 원산지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안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7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부터 제17호의8까지)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사.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을 위해 출입ㆍ조사ㆍ열람 등을 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를 규정 (안 시행규칙 제35조)

아.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규정 (안 시행규칙 제36조)

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도형의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별표2,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5. 9.
- 마감일자 : 2019. 6. 18.

○ 현행법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및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함. 그러나 행정규칙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위한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청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등 법률에 아무런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임.

이에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제45조의2 및 제50조).

○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에서 확보해야할 화재안전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제2항 개정)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 제9조의6 신설)

1) 행정규칙(「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 등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신청인에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행정규칙에서 갈음하도록 하는 등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2)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토록 함(안 제45조의2)

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11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9.
- 마감일자 : 2019. 6. 18.

○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안 제28조제1항)

1)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발생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 공사비 소요 및 행위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하여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37

조제5항)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6. 19.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폐기물의 배출부터 보관일정, 보관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 확대(안 제2조)

1) 현재 수출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됨.

2) 최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시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9조, 제17조의2)

1) 현행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수출입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및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제출서류를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 보다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 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5. 3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 · 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5. 30.

○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료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

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1)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1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6. 19.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1)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1) 약사법 개정(’19.1.15 개정, ’19.7.16 시행)으로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종전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6. 19.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 (안 제4조의2 제1항)

1)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다.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

1)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 제2항)

1)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마.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1)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 제4항)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 제2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제1항)

1)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1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6. 19.

○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으로, 합동정보조사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계태세 발령에 관하여 정보판단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5. 10. • 마감일자 : 2019. 6. 1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1)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2)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주문과 동일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13. • 마감일자 : 2019. 6. 2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2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13. • 마감일자 : 2019. 6. 24.

○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과 부두시설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

1)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선이 이루어지던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도선이용없이 자력 출항하려다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출항 현황과 부두구조, 지리적 여건 등 항만여건을 고려해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부산항 용호부두, 다대포부두, 영흥화력부두, 삼천포 신항, 제주 애월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나.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 마련

1)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준(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가 1명에 불과한 도선구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 선사 최소한 지정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13. • 마감일자 : 2019. 6. 24.

○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상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24.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13. • 마감일자 : 2019. 6. 24.

○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에 설정한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에 바로 허가를 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골재업계로 하여금 채취기간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 국가현안점검회의)」에 바다에서의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가.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1의4)

1)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25.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13. • 마감일자 : 2019. 6. 24.

○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1)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1)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1)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1)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마.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1)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바. 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1)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14.
- 마감일자 : 2019. 6. 24.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2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24.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기준(제10조 관련) 개정

1) 별표 서식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 강화

2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협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의 명확성 강화(제33조제5항)

1)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간주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24.

○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1)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24.

○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을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개정)

1)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으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지자체

장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히 인력이 운영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 마련(안 별표5 제1호 라목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의 일반기준으로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

2) 이에 과태료 가중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의 중과실, 위반기간 3개월 이상, 위반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3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1)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28.

○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기하고자 하는 것임.

33.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5. 15. • 마감일자 : 2019. 6. 11.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16. • 마감일자 : 2019. 6. 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3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16. • 마감일자 : 2019. 6. 25.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1)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1)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5. 16. • 마감일자 : 2019. 6. 25.

○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

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전안장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및 첨부물을 규정

1) 제3조 제2항을 생전안장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순차적 변경

2) 생전안장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신설

3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5. 16.
- 마감일자 : 2019. 6. 25.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5. 17.
- 마감일자 : 2019. 6. 26.

○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나.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강화 (안 제54조, 제65조)

다.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3조의7, 제75조의2)

라. 국가기반시설 분야 및 지정기준 추가 (안 별표2)

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 지정, 변경 (안 별표 1의2, 별표1의3)

3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17. • 마감일자 : 2019. 6. 27.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될 항만건설작업선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안 제40조제3항)

나.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기름여과장치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 7 제1호)

다.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확대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9호, 별표 3 제3호, 별표5 제9호, 별표 8 제6호 및 제13호, 별표 9 제6호, 별표 20의3 제2호,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등)

라. 관계기관의 법령해석 및「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4)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는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함(안 별표 21의2 제2호사목 및 아목)

4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5. 17.
- 마감일자 : 2019. 6. 26.

○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나.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다.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라. 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마.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바. 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

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7.
- 마감일자 : 2019. 6. 26.

○ 의료급여 건강검진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1)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17. • 마감일자 : 2019. 5. 29.

○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공동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별표 7)

1) 위반행위 조문 별 상한액인 5백만원∼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